

가족 간의 언어 예절

- 호칭을 중심으로

채완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에 《표준 언어 예절》을 펴내어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생활의 길잡이로 삼아 왔다. 그러나 가족, 친척 간의 언어 예절을 볼 때 현실과 떨어진 규범이 더러 눈에 띈다. 가족 구성원이 단출해지면서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예절을 배울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표준 규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막상 제시된 규범이 언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면 언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전통 예법에 맞으면서도 언중들의 사용 현실을 수용한 규범이 절실한 것이다.

언어 예절은 대상이 되는 인물을 부르는 호칭과 가리키는 지칭, 대화에 나오는 인물을 위상에 맞게 대우하는 경어법이 중심을 이루는데,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가족 친족 간의 호칭, 지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호칭과 지칭은 대부분 겹치므로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호칭으로 통칭한다.

첫째, 친족 호칭의 구분 기준을 정리한다.

둘째, 《한불자전(韓佛字典)》(1880)에 등재된 표제어를 통해 전통적인 호칭을 살펴본다.¹⁾

셋째, 우리말 호칭이 겪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원인을 살펴본다.

넷째, 위의 논의를 토대로 《표준 언어 예절》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2. 친족 호칭의 구분 기준

친족 호칭에는 어떤 사람이 부계 친족인지 모계 친족인지, 직계(直系)인지 방계(傍系)인지, 혼인에 의해 맺어진 인척인지, 본처의 자식인지 첩의 자식인지,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전남편의 자식인지, 입양된 자식인지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첫째, 직계와 방계의 구분이다. 직계란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한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직선으로 위의 조상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등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는 혈족을 직계 비속이라 하며, 이들을 총칭하여 직계 존비속이라 한다.

방계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들의 직계 비속을 가리킨다. 종조부모, 백숙부모, 조카, 종손자녀 등이 방계 혈족이다.

둘째, 세대의 구분이다. 세대의 구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촌수로서, 짝수인 촌수는 자기와 같은 세대이거나 짝수 세대 위아래를 나타내고, 홀수인 촌수는 자기보다 홀수 세대 위아래를 나타낸다.

셋째, 상대적 나이를 나타낸다. 같은 세대일 경우 화자와 청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세분된 호칭이 있다.

1) 《한불자전》의 친족어에 대한 내용은 채완(2009, 2013)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넷째, 성별의 구분으로, 화자 청자의 성별뿐 아니라 관계의 고리가 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녀는 ‘사촌’, 아버지의 여자 형제의 자녀는 ‘고종사촌’, 어머니의 남자 형제의 자녀는 ‘외사촌’, 어머니의 여자 형제의 자녀는 ‘이종사촌’이다.

다섯째, 부계와 모계의 구별이다. 모계의 친족은 아버지 쪽 친족의 이름 앞에 ‘외(外)’를 붙여서 부계와 구별한다. 아버지의 어머니가 ‘할머니’면 어머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 아버지의 남자 형제가 ‘삼촌’이면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으로 구별하는 방식이다.

여섯째, 결혼에 의해 맺어진 인척의 구별이다. 남성의 경우 처의 부모는 ‘장인, 장모’라 하고, 나머지 친족은 ‘처형, 처남’처럼 ‘처(妻)’를 붙인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친족에 대해 ‘시아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등과 같이 ‘시(媳)’를 붙인다.

일곱째, 적서(嫡庶)의 구별이다. 첩의 자식에게 ‘서(庶)’나 ‘얼(孽)’을 붙여 ‘서자’, ‘서출’, ‘얼형’ 등과 같이 부른다. 서자가 아버지의 본처나 본처의 자식을 부르는 호칭도 별도로 있었다.

여덟째, 여성이 전남편의 자식을 데리고 재혼할 경우, 새 남편이 전남편의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으며,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간 자식들 입장에서 어머니의 새 남편을 부르는 호칭도 따로 있었다. 그러나 남성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후처의 자식이 특별히 구별(차별)되어 불리지 않았다.²⁾

아홉째, 입양 관계에 의해 맺어진 친족에 대해서는 ‘양(養)’을 붙여서 구별한다.

2) 《한불자전》에 등재된 표제어에는 일곱째, 여덟째와 같은 구분이 나타나지만 현대에는 첩을 두는 일이 없고 여성의 재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그와 같은 구별 호칭이 사용될 일이 거의 없다.

3. 《한불자전》을 통해 본 19세기 국어의 친족 호칭

박병호(2003:111)에 의하면 친족 호칭의 실제 관행은 당시에 작성된 유산 분재 문서, 재산 증여 문서, 계약 문서 등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문서에는 친자 간, 조손 간, 형제자매 간 등 당사자 외에도, 그 문서 작성에 증인 또는 문서 작성자로서 관여하는 동성(同姓), 이성(異姓)의 방계 친족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15세기에는 ‘손(孫), 질(姪), 숙(叔), 조(祖), 형(兄), 제(弟)’ 등에 동성, 이성과 촌수를 붙이고 있을 뿐이며 법제상의 중국식 친족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從)/당(堂), 재중(再從)/재당(再堂), 삼중(三從), 사중(四從)’ 등의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친족 칭호는 친계에 의한 구별 의식이 없었고 거의 4촌 이내의 근친에 대해서만 권리 의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사촌이 최후의 근친이라는 관념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였다.

1880년에 간행된 《한불자전》에는 445개의 친족어가 실려 있다.³⁾ 그 범위가 9촌, 현조(오대조)에 이르고, 재혼 가족, 서족, 입양 가족 등 가족의 형태에 따른 호칭, 지칭들이 실려 있어 박병호(2003)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세분된 친족 호칭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략 4촌 이내, 상하 2대까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부계 직계 존속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은 다음과 같다. 외가 쪽 조부모는 부계 친족어 앞에 ‘외’를 덧붙여 만든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존칭, 비칭, 평칭 등을 구분하고 방언형도 구분하여 매우 세밀하게 뜻풀이를 하였다.⁴⁾

3) ‘아으, 아이, 아으’가 모두 ‘아우(弟)’를 뜻하는 표제항인데, 이처럼 표기만 다른 표제항들을 각각 별개로 헤아린 것이므로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숫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

4) 각 친족어의 자세한 의미는 채원(2013) 참조.

- (1) [조부]⁵⁾ - 한아버, 할아버양(방언), 할아베, 할아버니, 할아버, 조부
- (2) [조모] - 할미암, 할메, 할머니, 조모
- (3) [부] - 아바님, 아빅암, 아베, 아범, 아버니, 아버지, 아비, 가친, 부, 엄부, 엄친, 부친, 생부(生父)⁶⁾
- (4) [모] - 어매암, 어맘, 어메, 어멈, 어머니, 어미, 모, 모친, 생모(生母)

‘할마와 ‘한아버’는 당시에 이미 친족이 아닌 ‘늙은이’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계 비속과 그 가족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은 다음과 같은데, 표기법 외에는 거의 그대로 현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밋머느리’는 ‘미래’의 시아버지 집에서 살며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워지는 어린 소녀라 하여 민머느리 제도를 서술하고 있다.

- (5) [아들] - 아들, 즈, 맞아들, 맞놈(長男), 장즈
- (6) [딸] - 딸, 맞년(長女)
- (7) [손주] - 손, 손즈, 손녀, 외손, 외손즈
- (8) [아들의 배우자] - 며느리, 즈부, 밋머느리(幼婦)
- (9) [딸의 배우자] - 사희
- (10) [손자/손녀의 배우자] - 손부/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호칭은 다음과 같이 화자 청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5) []는 기본 의미를 표시한다.

6) 한자 표기는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용한다.

- (11) [남성 화자: 손위 남자 동기/그 배우자 - 형, 엄부형(嚴父兄)⁷⁾, 빅씨, 장형(長兄), 중형(仲兄)/형슈
- (12) [남성 화자: 손아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아오, 동싱/계슈, 계수(季嫂), 데슈(弟嫂), 아자면이
- (13) [남성 화자: 손위 여자 동기/그 배우자] - 누님, 누의, 맛누의/매형
- (14) [남성 화자: 손아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누의, 매(妹)/매부
- (15) [여성 화자: 손위 여자 동기/그 배우자] - 형/진아즈비(眞叔)
- (16) [여성 화자: 손아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아오, 동싱/진아즈비(眞叔)
- (17) [여성 화자: 손위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오라버니, 오라비/오러미, 형
- (18) [여성 화자: 손아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데)/올게

여성이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따로 실리지 않고 ‘데(弟)’에 대해 ‘남동생, 여동생’이라고 뜻풀이되어 있으나 호칭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18)과 같이 () 안에 표시하였다.

(15), (17)을 보면 ‘형’의 의미가 현대 국어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불자전》에 의하면 ‘형’은 ①남녀 각각 동성(同性)인 손위의 동기를 부르는 말, ②친족이 아닌 연장자에 대한 존칭어, ③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말, ④손위의 시누이를 부르는 말(‘형님’⁸⁾의 형태로)이다. ②와 ④는 현대어와 같지만, ①과 ③은 다르다. 현대어에서 여성끼리는 ‘형’이라 하지 않고 ‘언니’라고 부르며, 오빠의 아내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⁹⁾ ‘새언니’라 부른다. 현대의 표준어에서 여성끼리 ‘형’이라 부르는 경우는 ‘형남’의 형태로 굳어져서 손위의 동서나 손위의 시누이를 호칭, 지칭하는 경우뿐이다.

‘언니’는 《한불자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19세기 말 무렵에 ‘언니’가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 2010:8)에

7) 큰형에 대한 경칭이다.

8) 이러한 용법의 ‘형님’은 표제어로는 실려 있지 않고 ‘식누의 형의 설명’에만 나타난다.

9) 방언에 따라서는 언니나 올케를 ‘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다.

의하면 ‘언니’가 처음 나타난 사전은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한 《신자전(新字典)》(1915)인데, 같은 부모에게서 난 손윗사람을 ‘맏, 형, 언니’라 부른다고 하였다.

1920년에 출간된 《조선어사전》에서는 ‘언니’를 ‘유아가 ‘형’을 부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언니’가 당시에는 ‘형’의 유아어로서 남녀 모두가 동성의 손위 동기를 부르는 말이었던 것이다.¹⁰⁾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 ‘형’은 남자끼리, ‘언니’는 여자끼리 부르는 말로 변하였다. 윤석중 선생이 작사한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 가사에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는 구절이 나와서 ‘언니’가 여성만의 호칭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진아즈비(형부, 제부)와 ‘오러미(올케)’는 현대어에서 사라졌다. ‘오러미(올+어미)는 단어 구성상 ‘오라비(올+아비)와 평행적이다.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가족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

- (19) [아버지의 손위 남자 동기/그 배우자] - 빅부, 증부/빅모, 빅숙모
- (20) [아버지의 손아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계부(季父), 삼촌, 숙부/숙모
- (21) [아버지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고모/고모부
- (22) [어머니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이모/이모부
- (23) [어머니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외숙, 외구(外舅), 외삼촌/외숙모
- (24) 부모의 남자 동기와 부모의 여자 동기의 배우자의 통칭 - 아자머니, 아자씨, 아즈빅암
- (25) 부모의 여자 동기와 부모의 남자 동기의 배우자의 통칭 - 아자머니, 아지매암
- (26) [아버지 남자 동기의 아들/딸] - 종형, 종데, 스촌/스촌종덕
- (27) [아버지 여자 동기의 아들/딸] - 고종씨, 닉종씨, 닉종스촌/고종덕, 닉종덕

10) 필자 주변의 60대 이상 서울 토박이 남성 화자들이 어렸을 때 형을 ‘언니’라고 불렀음을 증언하였다.

(28) [어머니 남자 동기의 아들/딸] - 외종씨()

(29) [어머니 여자 동기의 아들/딸] - 이종씨, 이종스촌/이종릭

(19), (20)과 같이 아버지 쪽 남자 동기의 호칭은 위아래를 나누지만 어머니 쪽은 하나로 통칭되었고, 아버지 쪽도 여자 동기는 위아래를 나누지 않았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같은 형태는 등재되지 않았다.

(28)의 ()는 전체 체계에 비추어 ‘외종매(外從妹)’가 들어갈 자리로 보이지만 《한불자전》에 누락되어 있어 빈칸으로 두었다.

(24), (25)의 ‘아자버니, 아자먼이’ 계열의 호칭은 19세기 당시 친가와 외가의 친족에게 두루 사용되고 있었다. ‘아자먼이’는 친척이 아닌 남에게도 쓴다고 설명되어 있어 19세기에 이미 친족어가 아닌 일반어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이 확인된다.¹¹⁾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과 그 가족의 호칭, 지칭은 다음과 같이 지금과 차이가 없다.

(30) [남자 동기의 아들/그 배우자] - 족하/족하며느리

(31) [남자 동기의 딸/그 배우자] - 질녀, 족하쫘/족하사회

(32) [남성 화자: 여자 동기의 아들/그 배우자] - 칭질, 외칭(外甥)/칭질부

(33) [남성 화자: 여자 동기의 딸/그 배우자] - 칭질녀/생질서

(34) [여성 화자: 여자 동기의 아들/그 배우자] - 이질/이질부

(35) [여성 화자: 여자 동기의 딸/그 배우자] - 이질녀/이질서

(36), (37)은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들인데 대부분 호칭으로 쓰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대의 배우자 호칭인 ‘여보’는 남을 부르는 호칭으로 뜻풀이되어 있고, 부부간의 호칭은 따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¹²⁾

11) ‘아자버니’와 ‘아자먼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채완(2013)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2) 최근까지도 나이트 세대에서는 남의 앞에서 부부간에 서로 부르는 것이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 (36) [남편] - 남편, 남진, 남편네, 낭군, 지아비
 (37) [아내] - 안희, 마누라, 너즈, 네편네, 녀편네, 지어미, 처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호칭은 다음과 같다.

- (38) [아내의 부모] - 악장(岳丈), 장인, 가식아버지, 외구(外舅), 빙부, 빙장/악모(岳母), 장모, 빙모
 (39) [아내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처남/()
 (40) [아내의 손위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처형/동서, 인형(姻兄)
 (41) [아내의 손아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처데/동서, 인데(姻弟)
 (42) [남편의 부모] - 식아버지, 식부/식어미, 식모
 (43) [남편의 손위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식)아자버니/동서
 (44) [남편의 손아래 남자 동기/그 배우자] - 식아즈비/동서
 (45) [남편의 손위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식누의, 형님/()
 (46) [남편의 손아래 여자 동기/그 배우자] - 식누의, 아기씨/()

(38)의 ‘외구’에는 ‘외삼촌’의 뜻도 있다[(23) 참조]. (39)의 ()는 ‘처남의 아내’, (45), (46)의 ()는 ‘시누이의 남편’에 해당되는데, 전통적으로 내외를 하는 상대이므로 호칭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호칭이 필요하게 되어 《표준어 예절》에서 각각 ‘처남댁, 처남의 댁’, ‘아주버님(손위), 서방님(손아래)’으로 정하였다.

현대어에서 시동생을 부르는 ‘도련님’과 ‘서방님’은 《한불자전》에 시동생이라는 뜻은 없고, 각각 ‘서민이 결혼하지 않은 양반의 자식에게 붙이는 경칭(도련님), ‘서민이 아직 어린 양반에게 붙이는 경칭(서방님)’으로 뜻풀이 되어 있다. 《한불자전》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도련님, 서방님’이 시동생의

여거 아이에 기대 불렀다. 참고로, 이규대 씨와 이지람 씨가 불렀던 ‘내 이름 예술야’(1984)에 [“예술야.” / 아버지께서 부르셔 / “예” 하고 달려가면 / “너 아니고 네 엄마.”]라는 가사가 있다.

호칭이 된 것은 19세기 말 이후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어에서 시누이의 호칭인 ‘아기씨’는 표제항에서는 ‘젊은 부인. 서민이나 하인이 양반 여성에게 붙이는 호칭’으로만 뜻풀이되어 있으나, ‘식누의’ 항에 ‘남편보다 나이가 적은 시누이’로 올라 있어 당시에도 시누이의 호칭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호칭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로 대가족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친족 간의 호칭, 지칭이 빠르게 사라져 가는 한편, 친족보다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촉이 더 많아지면서 일반 호칭의 부족한 부분을 친족어가 메꿔 가는 현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 직함에 민감하여 직함이 없는 남을 부를 때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려워한다. 친족 관계가 아니면서 직함도 없는 남을 부르는 말이 없어, 그 자리를 ‘형, 언니,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친족어가 대신하거나, 아예 부름말도 아닌 ‘저기요’ 같은 말이 쓰이기도 한다. 직함 없는 연장자에게 쓰는 ‘어르신네/어르신’ 같은 호칭이 있으나 잘 사용되지 않는다. ‘어르신네/어르신’이 노인이라는 느낌을 줘서 듣는 사람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으로 대우 받는 것이 존중되고 존경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소외되고 홀대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노인장(老人丈)’이 실려 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 형, 언니’ 등은 진작부터 일반 호칭으로 사용되어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일반어로서의 뜻풀이가 실려 있다. 이 중 ‘할아버지, 할머니, 형, 언니’는 지금도 친족어가 주된 기능이지만,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는 남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정작 친족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쓰지 않고 ‘삼촌, 고모, 이모’ 같은 친족 지칭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친족어의 일반 호칭화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서, 최근에는 ‘삼촌, 이모, 언니’가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부르는 말로 자리를 잡았다. ‘이모, 언니’는 화자보다 나이가 더 많고 적은 것에 상관없이 사용된다. 부르는 사람이 몇 살인지는 문제되지 않고 상대를 대략 중년 여성으로 대우하면 ‘이모, 상대적으로 젊게 대우하면 ‘언니’를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그러한 의미가 등재되지는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말들은 친척이 아닌 남을 ‘예사롭게,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뜻풀이되어 있다. 즉 이 호칭들은 조심해야 할 어려운 상대에게는 쓰기가 어려운 말로서, 그 빈칸을 ‘아버지/아버님, 어머니/어머님’이 메꾸는 추세다. 특히 티브이(TV) 방송에서 노년층의 일반인 출연자를 그렇게 부르는 일이 많은데, 부모를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를 남에게 쓴다는 것이 필자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방송을 보고 혹시나 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자기의 아버지/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여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뜻풀이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어느 틈에 ‘어머니, 아버지’가 남을 부르는 말로 사전에까지 등재되었단 말인가?

현대 국어의 경어법이 수직적인 권위보다 수평적 친근성을 표현하는 쪽으로 점차 변해 가는 것에 발맞춰 호칭도 존경보다는 친근성을 표현하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표준 언어 예절》을 펴낼 당시에 성인이 부모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한 위원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성인이 된 자녀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위상이 달라짐에 따른 변화도 감지된다. 아내의 형제자매는 ‘처남, 처형, 처제’와 같이 경칭이 불가능한 지칭을 그대로 호칭으로

쓰면서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는 ‘도련님, 서방님, 형님,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¹³⁾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 자리를 ‘삼촌, 고모’가 대신하는 추세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고 본다.

5. 《표준 언어 예절》의 개선 방향

《표준 언어 예절》은 언어생활이나 교육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해 주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서술에서 부족하거나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성차별적 요소도 눈에 띄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표준 언어 예절》에서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에 한정하여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부모와 자녀 사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에게 ‘어미’라고 할 수 있지만 손주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13쪽)라는 서술이 있는데, ‘아버지’ 쪽 서술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버지에 관한 사항은 어머니 쪽을 보고 짐작한다든지 그 역으로 추측하게 해서 안 되고 평행되게 서술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호칭을 알고자 할 때 해당되는 조항만 찾아보기도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올바른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자녀들을 구별하여 부르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편이 좋겠다(15쪽). 예전에는 혼인 여부로 어른인지

13) 인터넷에서 ‘도련님, 아가씨’로 검색하면 이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호칭 개정 청원까지 있을 정도이다.

아닌지를 구별했지만 지금은 늦게 결혼하거나 비혼(非婚)¹⁴⁾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또 결혼한 사람만이 자녀를 갖는다든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갖는다는 것도 불변의 규범은 아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에 아들과 딸을 차별하여 서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자녀가 부모가 되었거나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어 호칭으로 대우해 주고 싶다면 ‘아들’을 ‘아들이나 딸’로 바꾸어 ‘손주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들이나 딸을 손주 앞에서 존중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열로 부르거나 직함으로도 부를 수 있다.’로 바꾸어 서술하면 충분하다.

5.2 처부모와 사위 사이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친족어의 변천은 가족 제도나 혼인 풍속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박병호(2003:95-96)에 의하면 한국의 혼인 풍속은 16세기 무렵까지도 현재와 다른 ‘남귀여가혼속(男歸女家婚俗)’이었다고 한다. 즉 남자가 처의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고¹⁵⁾ 그 자손은 외가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본종(本宗)과 외친(外親)을 구별하는 중국식 친족 칭호와 달랐다고 한다. 내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외삼촌과 생질이 같은 집에서 살게 되니 호칭도 성이 같은 동종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법적(宗法的) 가족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남귀여가혼속’이 쇠퇴한 18세기 이후에 와서야 본종(同姓)과 이종(異姓, 外親)의 호칭이 확연히 구별되게 되었다고

14) 결혼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미혼(未婚)’만이 사전에 실려 있는데, 그러한 전제를 담지 않은 ‘비혼(非婚)’도 사전에 표제항으로 실려야 할 것이다.

15) 율곡 이이(1536~1584)도 어머니인 신사임당(1504~1551)이 태어난 외가에서 출생하였다.

한다. 처의 부모도 자기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고 부모로 섬겼으나 혼속이 달라지면서 호칭도 ‘장인, 장모’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부계와 모계를 엄격히 구별하는 친족어가 확립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이다. 전통에 비추어 보나 현대의 생활 양식으로 보나 처의 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처부모를 부를 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칙이되 ‘아버님, ‘어머님’도 쓸 수 있다.’(26쪽)고 한 서술을 ‘처부모를 부를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 원칙이되 ‘장인어른, ‘장모님’도 쓸 수 있다.’로 바꾸는 편이 적절하다고 본다.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서술과,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장안, ‘장모’라 할 수 있고, 처부모를 높여서 말할 때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다.’(27쪽)라는 서술은 남성 중심의 차별적 시각을 드러낸다. 처부모를 경칭 없이 ‘장안, ‘장모’라고 지칭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무례한 것이다. 부모는 친부모든 시부모든 처부모든 높이는 것이 원칙이자 기본으로, 유독 처부모에게만 평칭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5.3. 남편에 대하여

부부 중심의 핵가족 사회에서 가정 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호칭을 어떤 말은 옳고 어떤 말은 그릇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호칭이 권장된다는 정도로만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언중들의 직관과 동떨어져 보인다’(32쪽).

5.4. 아내에 대하여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자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37쪽).

5.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동기간에도 혼인 여부를 호칭 변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44쪽).

손아래 올케에 대하여 ‘○○(자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하였는데(51쪽), 그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호칭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5.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손아래 시누이에 대해 자녀에 기대어 쓰는 ‘고모’라는 말을 지칭으로만 쓰고 호칭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한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아가씨, 아기씨’만을 규범으로 제시한 것인데(62쪽), 시누이가 나이 먹고 결혼하고 늙어도 ‘아가씨, 아기씨’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 언어 감각에 맞지 않고, 또 이 말들이 예전에 하인이 상전을 부르는 호칭이었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크다. 그 대안으로 ‘고모’라는 호칭이 널리 쓰이고 있다.

시동생을 부르는 ‘도련님, 서방님’도 같은 이유로 ‘삼촌’에 밀리는 추세다. ‘아가씨, 도련님’ 등을 규범으로 삼되 ‘고모, 삼촌’도 허용하는 절충안을 택하면 언중의 불편함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들의 자녀의 이름에 기대되 자녀의 이름을 생략하고 ‘아범, 어멈, 아버지, 어미’ 등으로 자녀를 부르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시동생과 시누이를 ‘삼촌, 고모’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모부(시누이의 남편), ‘외숙모(처남의 아내)’라는 호칭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5.7. 사촌에 대하여

‘나의 친가 쪽 사촌을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아버지 사촌’, ‘아버지 고종사촌’, ‘어머니 사촌’, ‘어머니 고종사촌과 같이 지칭한다.’(109쪽)고 서술되어 있는데, 각각 전통적 지칭이 있다. ‘아버지 사촌은 ‘당숙(堂叔)/종숙(從叔)’이며 그 배우자는 ‘모(母)’를 붙인 ‘당숙모/종숙모’다. ‘아버지의 사촌누이’는 ‘당고모/종고모’이고 그 배우자는 거기에 ‘부(夫)’를 덧붙이면 된다. 참고로 아버지의 6촌은 ‘재당숙/재종숙’이다. ‘당숙/종숙’이 나를 부를 때는 ‘당질(堂姪)/종질(從姪), 당질녀/종질녀’가 되고 당질의 배우자에게는 ‘부(婦)’를, 당질녀의 배우자에게는 ‘녀(女)’ 대신 ‘서(孀)’를 덧붙인다. 이처럼 체계화된 호칭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이 규범이 정비될 때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사촌’은 ‘외당숙/외종숙’이며 그 배우자는 ‘외당숙모/외종숙모’다. 그런데 아버지의 4촌 누이는 ‘당고모’라는 호칭이 있는 반면 어머니의 4촌 여형제에게는 이름이 없다. 형태상으로 ‘*외당이모/*외종이모’ 같은 호칭을 유추할 수 있지만 사전에서 확인되지 않고 실제 들은 적도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표준 언어 예절》에는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남성과 여성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하며, 혹시 누락된 호칭 지칭이 있다면 찾아서 채워 넣어야 한다. 더러 설명과 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꼼꼼히 찾아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가족 간의 호칭, 지칭은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칭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데 표준 호칭과 다르다고 해서 한 가정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호칭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전통 사회에는 없었다가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난 사회에서의 호칭과는 문제가 다른 것이다. 적절한 호칭을 새로 만들어 보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오랜 기간 가정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호칭을 표준형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대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왔던 호칭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가 없게 되었으므로 필요할 때 찾아보는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실현되는 가족 친척 간의 호칭에 대해 몇몇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만으로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기는 어렵다. 가족 형태의 변화 양상을 폭넓게 포괄하고 전통적인 가정과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 걸맞은 가족 간의 언어 예절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과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조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편(2011), 《표준언어예절》.
- 박병호(2003), “여말선초의 친족의 칭호와 범위”, 서울대학교 《법학》 44-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94-113쪽.
- 이은령 외 옮김(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파리외방전교회/펠릭스 클레르 리텔 지음, 《한불즈던》(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소명출판.
- 이응백(1989), “친척의 계보와 호칭”, 《국어생활》 제19호, 44-60쪽.
- 조선총독부 편(1920), 《조선어사전》.
- 蔡琬(2009) “19世紀の韓國語における親族語 -『韓佛字典』の見出し語お中心に”, 油谷幸利先生還曆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會》, 東京 明石書店, 214-235쪽.
- 채완(2013), “19세기 한국어의 친족어 연구-『한불사전』 등재어를 중심으로”, 이은령 외(2013), 《한불사전 연구》, 소명출판, 313-339쪽.
- 梅田博之(2010), “韓國語のキョウダイ名について-再論”, 麗澤大學大學院言語教育研究科論集 《言語と文明》 8, 3-16쪽.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1880), 《한불즈던》(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C. Lévy, Imprimeur-Libraire, Yokohama.